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7,551,472	8,626,544
일반회계	270,438,749	8,113,162
특별회계	17,112,723	513,382
기타특별회계	17,112,723	513,3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0,051	43,802
의료급여특별회계	729,610	21,888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287,870	8,636
주택사업특별회계	181,000	5,43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86,000	2,58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836,439	85,093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7,304,155	219,125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75,000	74,25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730,412	51,91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2,186	66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50,32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